

2025. 7. 17.(목)

<본사 세미나실(1층)>

-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제23대 대의원 -

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

< 임시대의원회 안건개요 >

- [인준] 제10대 집행부 상무집행위원 인준
- [선출] 제10대 집행부 감사위원(2인) 선출
- [논의] 노사협의회(06월) 안건에 대한 대응의 건



민주노총/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

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

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

I. 제23대 대의원회 구성현황

① 활동근거

-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 제2절(대의원회) 제17,18조
- 대의원회 당선 공고('25. 02. 24.)

② 대의원회 구성개요

- 활동기간 : '25.02.24. ~ '26.02.24. ※제24대대의원 선출공고시까지
- 활동범위 : 조합규약 제20조(대의원회의 기능)
 - ※제15조 제2항(해산, 위원장·임원 선출 등)을 제외한 총회의 기능
- 대의원구성

소속(배정인원)	이름	비고	소속(배정인원)	이름	비고
기획실 안전관리실 (2)	김 환		대전오월드(4)	박 지 호	
	이 민 주			전 형 진	
경영지원처 (2)	이 동 근			한 상 혁	
도시재생처 (2)	변 예 림		환경사업처(8)	김 철 규	
	오 수 지			주 호 종	
도시개발처 산업단지처 (2)	정 태 원			서 윤 식	
	고 경 철			장 희 환	
건축사업처 (2)	한 진 만			권 재 휘	
	임 정 준			임 승 현	
				김 동 신	
				이 동 용	
합 계			총 20명		

Ⅱ. 임시대의원대회 안건

[인준] 제10대 집행부 상무집행위원 인준

<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제10대 집행부 구성(안) >			
위 원 장		김 문 현	
부 위 원 장		이 병 호	
사 무 국 장		염 상 빈	
조직부장	한 진 만(대의원)	쟁의부장	박 중 상
정책부장	김 광 호	기획부장	전 지 환
교육부장	서 윤 식(대의원)	복지부장	이 지 혜
소통부장	이 정 현	홍보부장	이 종 의

※ 노동조합규약 제 24조(구성)에 따라 상무집행위원은 “임원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인준”으로 확정되며, 대의원이 위원으로 선출될 시 겸직할 수 없음.

[인준] 노사협의회 위원 및 단체교섭위원 인준

연번	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위원		비 고
	소 속	성 명	
1	노동조합 위원장	김 문 현	대표교섭위원, 당연직
2	노동조합 부위원장	이 병 호	당연직
3	노동조합 사무국장	염 상 빈	당연직
4	노동조합 대표감사	최 현 탁	
5	노동조합 복지부장	이 지 혜	
6	노동조합 조직부장	한 진 만	간사

[선출] 제10대 집행부 감사위원 선출

○ 감사위원 선출근거 :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 제27조(구성)

<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>

제27조 (구성)

- ①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대표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집행부 임원의 임기로 한다. 단, 사퇴코자 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대의원회 결의로 사퇴한다.
- ④ 대의원이 위원으로 선출될 시 겸직할 수 없다.

※ 노동조합규약 제 27조(구성)에 따라 감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2명 이내로 선출되며, 대의원이 위원으로 선출될 시 겸직할 수 없음. 2명 선출시 감사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표감사 선임.

***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본 회의에서 선출된 상무집행위원 및 감사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기에 선거관리규정 제34조(재선거 및 보궐선거)에 따라 보궐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재선출 하고자 함.**

[논의] 노사협의회(06월) 안건에 대한 대응의 건

2025 대전도시공사 2분기 노사협의회 관련 회의록			
회의일시	2025. 07. 10. 목요일. 09:00 ~	회의장소	본사 노동조합 사무실
참석자	총 5명 참석		
	김문현(위원장), 염상빈(사무국장), 정해교(경영본부장), 이상윤(경영지원처장), 최병철(인사총무팀장)		
주요안건	2025년도 2/4분기 사무 노사협의회 노측 안건 관련 회의		
회의내용			
<p>○ 2025년도 2/4분기 사무 노사협의회 노측 안건 관련 회의</p> <p>- 단체협약 위반 사항에 따른 노동조합 요구 안건</p> <p>1. 사측 대표자 공개 사과</p> <p>⇒ 노측 의견 : 원안 유지</p> <p>⇒ 사측 의견 : 경영본부장 명의 유감표명문 공사 내부 게시판에 게시</p> <p>※공개위치 : 전자결재시스템 - 공지사항</p> <p>내용 : “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, 제도 개선”</p> <p>2. 정문 및 지하 출입 게이트 철거</p> <p>⇒ 노측 의견 : 원안 유지</p> <p>⇒ 사측 의견 : 기록 불가능한 독립형 장비로 교체 추진 및 시설 유지</p> <p>3. 관련자 징계 요구</p> <p>⇒ 노측 의견 : 원안 유지</p> <p>⇒ 사측 의견 : 공식 징계는 실시하지 않되, 관련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시행</p> <p>4. 향후 재발 방지 대응 방안 요구(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)</p> <p>⇒ 노측 의견 : 원안 유지</p> <p>⇒ 사측 의견 : 경영본부장 주관으로 [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제도개선 TF] 구성</p>			